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11의3] <신설 2010.11.15>

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 
(제83조의2제2항 관련)

진폐장해등급	구 분
제 5 급	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
제 7 급	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
제11 급	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
제13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